

**참고 1**

**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주요 개정 내용**

분	조항	주요 개정 내용											
예방법 시행령	[별표3] “과태료의 부과기준”	○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	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반행위</th> <th rowspan="2">근거 법조문</th> <th colspan="3">과태료 부과금액</th> </tr> <tr> <th>1회 위반</th> <th>2회 위반</th> <th>3회 이상 위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하.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 &lt;신 설&gt;</td> <td>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2</td> <td>100</td> <td>200</td> <td>5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부과금액	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	하.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 <신 설>	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2	100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부과금액									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									
하.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 <신 설>	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2	100	200	500									
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	제18조의2 (가축의 입식사전신고)	<p>○입식 사전신고 대상 축종 「축산법」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서 사육하는 닭 또는 오리</p> <p>○입식 사전 신고 사항, 절차 및 방법 -(신고사항) 입식 가축의 종류, 입식 규모, 일령(日齡) 및 예정일, 현재 사육 가축의 마리수, 사육시설 규모 및 사육 형태, 출하 예정일, 입식 가축 출하 부화장(농장), 축산계열회사업자 정보 (계약 사육 농가에 한함),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 -(신고절차) 입식 7일 전까지 “입식 사전신고서”를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</p>											
	[별표 1의8] “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” (시행일 : '20.5.28)	<p>○“식용란 선별포장업자”가 갖추어야 할 “소독설비 및 방역시설”의 세부 설치기준을 새로 마련(안 별표1의8.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)</p> <p>○해당 시설 출·입구에 차량 세차·소독 시설 설치, 농장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‘출입기록부’와 ‘소독실시기록부’를 구비</p> <p>○농장내 시설을 이용하여 “식용란 선별포장업”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단방역을 위해 그 건물 출입구를 사육시설 출입구와 서로 분리</p>											

**참고 2**

**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」 주요 개정 내용**

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기준

○ 제2호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부과금액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하.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 <신 설>	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2	100	200	500

**참고 3**

**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」 주요 개정 내용**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 개정안 신·구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제18조의2(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)</p> <p>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”이란 「축산법」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서 사육하는 닭 또는 오리를 말한다.</p> <p>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입식하려는 가축의 종류</li> <li>2. 입식 규모, 일령(日齡) 및 예정일</li> <li>3.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마리수</li> <li>4.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및 사육형태</li> <li>5. 출하 예정일</li> <li>6. 입식하려는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</li> <li>7.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(계약사육농가에 한한다)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	<p>8.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</p> <p>9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③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하여 입식하기 7일 전까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입식 사전 신고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고된 내용을 방역본부의 장(이하 “방역본부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</p>
제42조의2(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) ①·② (생략)	제42조의2(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검역관리인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무, 관리수의사는 제1항에 따른 임무의 일일 업무수행	③ ----- ----- -----



	<p>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</p> <p>(6) 약품, 소형 기자재,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를 설치할 것. 다만, 기자재,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 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</p>
--	--

## 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신설 사항

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2서식]

### 가축(닭·오리)의 입식 사전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7일
신고 농장	농장명 전화번호 주소	농장주 성명	
신고 내용	입식하려는 가축의 종류 육계[ ], 종계[ ], 육용오리[ ], 종오리[ ], 산란계[ ], 토종닭[ ], 혼합[ ]		
	사육 형태 축사[ ], 방목[ ], 축사 및 방목 혼합[ ]		
	사육시설 규모 동, m <sup>2</sup>	현재 사육가축 마리수	입식 규모
	입식 일령(日齡)	입식 예정일	
	출하 예정일	소독설비·방역시설 구비 및 정상작동 여부 소독설비[ ], 방역시설[ ], 정상작동[ ]	
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(대표자) (연락처) (소재지)			
축산계열화사업자(계약사육농가에 한함) (대표자) (연락처) (소재지)			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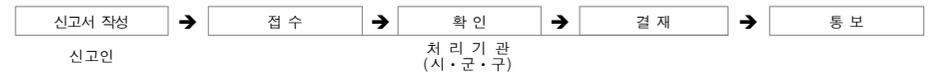
붙임 서류	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####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, 활용, 제공 동의서

위 신고인은 개인정보와 농장 정보를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#### 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